

고종대 ‘시무(時務)’의 개념과 그 의미

한보람*

〈차 례〉

1. 머리말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무’ 용례의 특징과 추이
3. 19세기 ‘시무’ 용례와 의미
4. 맺음말

[국문초록]

‘시무’는 ‘때에 따라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시무’의 개념은 조선 시대 전시기에 걸쳐 조선 정치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시무’ 용어를 분석해 보면 다음 몇 가지의 특징과 추이가 나타난다. ‘시무’ 용어의 사용은 의례적 사용으로 쓰인 경우, 시무상소의 경우, 실제 문제가 존재할 경우 등으로 크게 용도가 구분된다. 의례적 사용의 경우 인재 선발과 인재 평가, 과거 책문 등 주로 인재의 등용시에 쓰여 ‘시무를 아는 것’이 조선 시대 인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보여준다. 또 시무상소의 경우를 통해 시무를 논하는 주체가 주로 중앙정부의 고위 관료와 삼사였으며, 조선 후기로 내려올수록 유학과 무관으로까지 확대되는 변화를 맞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종대에는 ‘시무’ 용어의 사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어, 국정 운영상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또 다른 특징은 시무 논의의 전통적 주체였다고 할 수 있는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세력의 시무 인식이 새롭게 대두한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변화를 실용적으로 추진하되 민생안정이라는 전통적 정국운영의 목표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다. 또 고종대의 시무 논의가 확산하고 있었음은 향촌 인사 육용정의 시무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육용정의 시무 인식은 인재 선발을 위한 국왕의 노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시무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고종대 시무 논의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대전대학교 시간강사

[주제어] 시무, 고종대, 박규수, 김윤식, 육용정

1. 머리말

고종대는 전근대와 근대가 이어지는 시대로, 우리의 근대를 이해하기 위해 이 시기의 실체를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당대를 이끌어간 주요 정치세력의 정체성과 실체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당대에 가지고 있었던 주요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밝히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고종대 정치세력을 주목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세기에 새롭게 대두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고종대 개혁과 근대화를 추진한 주체에 대해 집중적인 조명이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체로서 ‘개화파’와 ‘고종’이 주목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개화파’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초기의 관련 연구들에서부터 조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었던 개혁의 주체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¹⁾ 이후 ‘개화파’는 개화의 방법과 속도, 사상적 차이의 기준에 따라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개량적 개화파’, ‘변법적 개화파’, ‘시무개화파’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었다.²⁾ 그런데 개화파를 분류하고 규정하는 이 같이 다양한 용어 중에서도 ‘시무(時務)’라는 용어는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용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흔히 19세기 ‘개화’ 또는 ‘개혁’과 연결되어 쓰이는 ‘시무’의 개념이 조선의 전통 속에서 19세기에는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는지를 보다 정밀하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³⁾

1) 이광린,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1969; 이광린, 『개화당 연구』, 일조각, 1973; 강재언, 『한국의 개회사상』, 비봉출판사, 1981; 이광린, 『개화파와 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89; 한국현대사회연구회, 『한국근대 개회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2009

2) 최진식, 『한국근대의 온건개화파 연구-김윤식·김홍집·어윤중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오승철, 『근대 개회사상의 발전과 분화에 관한 연구-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11-2, 한국민족사상학회, 2017

3) 고종대 ‘시무’ 용어는 ‘개혁’ 또는 ‘개화’와 연결되어 쓰였다. 최근 ‘시무’ 용어를 ‘개혁’과 연결하는

‘시무’의 개념과 관련하여 최근 연구 성과에서는 조선의 시무개혁론이 ‘이전 시기의 시무론과 달리 성리학에 대한 이해 속에서 『중용(中庸)』의 ‘시중(時中)’과 『주역(周易)』의 ‘변역(變易)’의 논리에 입각하여 구사’되었고, ‘시세의 변동에 즉하여 당대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되 철학적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시무론과 역사적 위상과 사회적 의미를 달리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⁴⁾ 조선의 시무개혁론은 조선왕조 개창 이후 조선만의 특징을 가진 시무론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핵심으로 ‘법이란 때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니 때가 바뀌면 법도 바뀌야 한다는 것’이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⁵⁾ 이러한 지적은 19세기 시무개혁론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 지식이 된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고종대 개혁세력의 모습을 복원한다면 조선의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그 역사적 실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근대사 연구에서는 19세기 개혁세력으로 ‘개화파’를 설정하고 근대적 시각에서 ‘개화’와 연결하여 ‘시무’를 바라보았다. 이에 ‘시무개화파’라는 용어는 실학적 전통을 잇고 있던 박규수 등의 인물이 김윤식, 김옥균 등의 후속세대에게 시무를 지도하였으며, 이들이 동도서기론의 입장에서 시무를 곧 개화로 받아들였다고 분석된 바 있다.⁶⁾ 이러한 분석은 ‘시무’라는 용어가 한국근대사에서 주목받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하였으며, 우리 역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고종대 관료들의 ‘시무론’에 주목하여 ‘시무개혁’을 규정한 선진 연구(김태웅, 『이유원의 경제론과 국제정세인식』, 『진단학보』 128, 진단학회, 2017; 김태웅, 『어윤중과 그의 시대』, 아카넷, 2018; 김태웅, 『수구·개화 이항 대립 틀의 허상 탈피-조선후기 時務改革論의 추이와 변화-』, 『역사교육』 157, 역사교육연구회, 2021; 김태웅, 『대한제국과 3.1운동』, 휴머니스트, 2022)가 발표된 이후 ‘시무’와 ‘시무개혁’에 주목한 연구들(하명준, 『근대 전환기 종친관료 이현영의 가문의식과 시무인식』,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한보람, 『고종대 전반기 시무개혁 세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한보람, 『19세기 시무개혁 세력의 성장과 개혁론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한보람, 『개항 전후 신헌(申愼)의 시무개혁론 연구』, 『한국문화』 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이 수행되고 있다.

4) 김태웅, 위의 논문, 2021, 323~329쪽.

5) 김태웅, 위의 논문, 2021, 332~334쪽.

6) 이상일, 『윤양 김윤식의 사상과 활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하원호,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역사적 변화』,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신서원, 1998; 한철호, 『시무개화파의 개혁구상과 정치활동』,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한국근현대사회연구회), 신서원, 1998; 한철호, 앞의 책, 2009.

가 근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전통과 근대를 어떻게 접합시키고 있었는가를 찾기 위한 유용한 시각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근대사에서 시무의 의미를 보다 넓은 시각에서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개화와 시무의 연결에서 논의를 더 확장하여 당대 조선사회의 현실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식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세상의 대두를 맞이하여 개혁을 이루어야 했던 당대 사람들의 과제에 한 걸음 더 실체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해 보면 조선 시대의 ‘시무’ 개념은, 유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선왕조의 정치 운영이 현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책무로 삼았다는 점에서, 조선의 역사와 더불어 시간과 의미의 범위를 확장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 주제이다. 19세기 서양 세력의 대두와 함께 ‘개화’의 의미로 나타난 개념으로서의 인식을 넘어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고종대 시무 개념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1장에서 『조선왕조실록』 전체에 수록된 ‘시무’ 용어를 추출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⁷⁾ 이를 시기별로 크게 나누어, 1절에서는 태조대~철종대, 2절에서는 고종대의 시기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시무’ 용례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고종대 ‘시무’ 논의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확산했던 점에 주목하여, 중심부와 주변부에서 논의된 ‘시무’ 개

7) 최근 19세기 고종대 연구에서 주요 역사용어를 중심으로 용법과 어휘의 추세를 검토하여 실체적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그 대표적인 연구로 노관범,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 - 언론 매체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노관범, 『대한제국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25, 한국실학학회, 2013; 노관범, 『대한제국기 신채호의 ‘어(我)’ 개념의 재검토, 『개념과 소통』 14, 한림과학원, 2014; 노관범, 『조선 말기 유신 개념의 역사적 이해 -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노관범, 『‘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 『한국문화』 8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노관범, 『조선시대 ‘利用厚生’의 용법과 어휘 추세 - 한국문집종간 정집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2020, 이경구, 『조선 시대 실학 용법에 대한 거시적 일고찰, 『개념과 소통』 26,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0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시무’ 용어의 유관 어휘까지 연결하여 용어를 둘러싼 추이를 광범위한 범위에서 전반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개념사 방법론을 이용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시무’ 용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시도한 점은 개념사의 방법론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밝힌다.

념의 실제 내용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고종대 개혁세력의 주축이자 정국운영의 핵심이었던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세력 인물군의 시무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2절에서는 고종대 시무 논의가 일반 유생으로 확산했던 점을 주목하여 충청도 지역 토반 육용정의 시무 인식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고종대 '시무'의 개념이 조선 왕조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변화, 발전해오고 있었는지, 고종대 '시무' 개념의 실체는 무엇이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시무' 용례의 특징과 추이

1) 태조~철종대 '시무' 용례 분석

'시무'는 조선 시대 전시기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에 등장하는 용어이다.⁸⁾ 따라서 '시무'의 개념은 조선 정치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 사용된 '시무'라는 용어가 시대별로 어떠한 의미와 비중을 가지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선 『실록』에 수록된 '시무' 용례의 특징과 추이를 살펴보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선 조선 국왕 총 27명의 재위 기간과 해당 시기에 나타나는 전체 '시무' 용어의 건수를 집계하는 작업을 수행해 본 결과 '시무' 용어가 나타난 총 기사 건수는 367건이다.⁹⁾ 그 결과를 왕대별로 집계한 것이 다음의 [표1]인데, 이를 보면 '시무' 용어가 전체 왕대에 걸쳐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몇 시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8) '시무' 용어는 『실록』 뿐 아니라 『승정원일기』에도 전체 왕대에 걸쳐 꾸준히 나타난다. 『승정원일기』에서 인조대부터 고종대까지 '時務' 키워드의 단순 검색으로 검색되는 총 건수는 746건으로, 『실록』과 비교하여 더 많은 건수가 나타난다. 다만 『승정원일기』의 검토로는 조선 전 시기에 걸친 검토 작업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 시대 전체의 추이를 살펴기 위해 본고에서는 『실록』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승정원일기』의 검토 작업을 통해 해당 자료가 담고 있는 시기들의 '시무' 의미를 더 세밀화, 구체화하는 작업은 추후의 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9) 총 376건 중 수정, 개수, 보궐 실록 등의 중복 9건을 제외한 367건.

있다. 조선 전기에는 태조, 태종대, 조선 중기에는 중종,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숙종, 영조, 정조대, 그리고 고종대에 잦은 빈도수로 등장하고 있다.

[표1] 『조선왕조실록』의 왕대별 '時務' 용어 수록 건수

| 왕명 | 재위 기간 | 기사 건수 | 어휘 건수 | 1년 당 기사 빈도수 | 중복 건수 |
|-----|----------|-----------------------|-----------------------|----------------|---------------------|
| 태조 | 6 | 5 | 6 | 0.83 | |
| 정종 | 2 | 4 | 4 | 0.50 | |
| 태종 | 18 | 32 | 32 | 0.56 | |
| 세종 | 32 | 8 | 8 | 0.25 | |
| 문종 | 2 | 4 | 4 | 0.50 | |
| 단종 | 3 | 1 | 2 | 0.33 | |
| 세조 | 13 | 4 | 7 | 0.30 | |
| 예종 | 1 | 2 | 2 | 2.00 | |
| 성종 | 25 | 12 | 14 | 0.48 | |
| 연산군 | 12 | 4 | 4 | 0.33 | |
| 중종 | 38 | 20 | 23 | 0.52 | |
| 인종 | 1 | 2 | 2 | 2.00 | |
| 명종 | 22 | 5 | 6 | 0.22 | |
| 선조 | 41 | 55 [37+18(수정)] | 57 [38+19(수정)] | 1.34 | |
| 광해군 | 15 | 14 [6(중초본)+8(정초본)] | 16 [7(중초본)+9(정초본)] | 0.93 | 중초본 6건은 모두 정초본과 중복임 |
| 인조 | 26 | 21 | 22 | 0.80 | |
| 효종 | 10 | 19 | 21 | 1.90 | |
| 현종 | 15 | 11 [4+7(현종개수)] | 11 | 0.73 | 현종개수 1건이 중복임 |
| 숙종 | 46 | 28 [25+3(숙종보필정오)] | 29 [26+3(숙종보필정오)] | 0.60 | 숙종보필 1건이 중복임 |
| 경종 | 4 | 4 [2+2(경종수정)] | 4 | 1.00 | 경종수정 1건이 중복임 |
| 영조 | 52 | 20 | 20 | 0.38 | |

| | | | | | |
|----|----|-----------|----|-------------|--|
| 정조 | 24 | <u>20</u> | 23 | <u>0.83</u> | |
| 순조 | 34 | 12 | 12 | 0.35 | |
| 현종 | 15 | 1 | 1 | 0.06 | |
| 철종 | 14 | 0 | 0 | 0.00 | |
| 고종 | 44 | <u>67</u> | 75 | <u>1.52</u> | |
| 순종 | 3 | 1 | 1 | 0.33 | |

이와 같은 추세를 각 시기별 상황과 연결해 보면, 조선 전기에는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태조, 태종대에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으며, 조선 중기에는 중종반정,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그에 대한 극복이 시대적 과제로 다가왔던 중종, 선조, 인조, 효종대에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을 마련해가는 대내적 움직임 속에서 정조대에 또한 그 언급이 두드러졌다. 또한 19세기에 들어서면 초중반부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다가 고종대에 들어서 조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빈도수로 시무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표2] '시무' 용어의 용도 구분 집계 건수

| | | | | | | | |
|--------|-----|------|-----|----------|----|----|---|
| 의례적 사용 | 169 | 시무상소 | 140 | 실제 문제 존재 | 61 | 기타 | 7 |
|--------|-----|------|-----|----------|----|----|---|

다음으로는 『실록』에 등장하는 '시무' 용어를 용도별로 [표2]와 같이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표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례적 사용이 담긴 기사가 169건, 시무 상소와 관련된 기사가 140건, 관련 현안으로 실제 문제가 존재할 경우가 61건으로 집계되었다.

각 항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빈도수가 높은 '시무' 단어의 사용 용도는 의례적 사용이다. 의례적 사용이란 '시무' 단어가 언급될 당시에 특정한 현안과 연결되는 용도가 아닌, 시무가 중요하다는 보편적인 뜻으로 쓰였을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표3]에서는 그 세부 내용을 더 나누어보았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의례적 사용의 경우 인재의 선발, 인물의 평가, 과거

시험의 책문, 직임의 사양 또는 사직, 경연 관련 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표3] '시무' 용어의 의례적 사용의 세부 내용 건수

| | | | | | | | | | |
|-------|----|-------|----|-------|----|-----------------|----|----|---|
| 인재 선발 | 29 | 인물 평가 | 27 | 과거 책문 | 19 | 직임의 사양 또는 사직 | 18 | 경연 | 8 |
|-------|----|-------|----|-------|----|-----------------|----|----|---|

그런데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경연 자리에서 국왕이 시무를 신하들에게 자문해야 한다는 신료들의 당부 기사를 제외하면,¹⁰⁾ 대부분의 경우 인물의 평가와 선발 문제에서 '시무'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건국 직후 반포된 『경제육전(經濟六典)』의 항목에서 인물을 천거할 때 '지식이 시무에 통하고 재주가 경제에 적합한 자'를 우대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¹¹⁾ 국정 운영을 수행할 인재를 선발할 때 '시무를 아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두었던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시험의 한 과정으로 제술과(製述科)의 책(策)에서 시무를 보도록 편성되어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¹²⁾ 따라서 인재를 선발할 때나 인물이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할 때, 그리고 관료가 스스로 자신의 직무에서 물러날 때 모두 '시무'를 알거나 모르는 것, 즉 '식시무자(識時務者)'가 관료의 자리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시무'는 국정 운영의 중요한 국면에서 상소를 올리는 주요 주제이기도 했다.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의례적 사용 용도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로 등장하는 것이 시무상소이다. 시무상소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건국 초기인 태조대에는 불교의 백성 침탈 제어,¹³⁾ 흥년에 지방관의 진흥 능력 평가, 노인, 효자, 절부 등의 우대 등¹⁴⁾ 유교 국가로서 국가의 기

10) 『인종실록』 권2, 1년 4월 2일, 4월 8일; 『선조실록』 권8, 7년 1월 21일, 『선조실록』 권33, 25년 12월 19일; 『광해군일기』 권49, 4년 1월 21일, 『광해군일기』 권71, 5년 10월 9일; 『현종실록』 권8, 5년 6월 10일.

11) 『태종실록』 권16, 8년 11월 16일.

12) 『정조실록』 권1, 즉위년 5월 28일. “製述之必以論策表賦爲法者, 論以觀其論議, 策以觀其時務, 賦以取其文理, 表以用之館閣, 其所定制, 亦皆有義.”

13) 『태조실록』 권15, 7년 11월 11일.

들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되었던 한편, 이후 임진왜란 때에는 군사를 훈련하는 일,¹⁵⁾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는 사회 혼란 속에서 공물(貢物)의 방납 폐단을 없애는 일,¹⁶⁾ 정조대에 과장(科場)의 폐단을 엄히 바로잡는 일¹⁷⁾ 등 각 시기별 긴급한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시무상소는 각 시기별 중요 현안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생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무상소와 관련해서 상소를 올리는 주체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발견된다. 고종대 이전 상소를 올린 주체들을 정리해 보면 의정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가 대부분이었고, 간혹 지방관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종대 이전 시기까지 총 104건의 시무상소를 분석했을 때, 그 주체는 다음 [표4]와 같이 삼사 61건, 의정부 14건, 육조 8건, 지방관 5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고종대 이전(태조~철종대) 시무상소의 주체별 건수

| | | | | | | | | | |
|----|----|-----|----|----|---|-----|---|----|----|
| 삼사 | 61 | 의정부 | 14 | 육조 | 8 | 지방관 | 5 | 기타 | 16 |
|----|----|-----|----|----|---|-----|---|----|----|

언론 담당 기관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삼사에서 시무상소를 올린 것이 압도적이고, 그밖에도 중앙정부 기관인 의정부와 육조에서 올린 경우도 드물지는 않다. 또한 지방관을 비롯하여 기타 건수로 오위(五衛)의 부사과, 부호군 등 무관이 4건, 승정원, 경연관, 유학 등은 각 1건씩으로 드물게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삼사와 중앙기관이 시무상소의 주요 담당자였으며, 이외의 기관이나 인물이 시무상소를 올리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사와 의정부, 육조 내에서도 시무상소를 올린 당사자의 직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상이 나타났다는 점도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초 세종대까지 나타나는 시무상소에는 대부분 상소를 올린 관서의

14) 『태조실록』 권15, 7년 12월 6일.

15) 『선조실록』 권51, 27년 5월 27일.

16) 『인조실록』 권50 27년 2월 14일.

17) 『정조실록』 권17, 8년 3월 18일.

정보만 나타날 뿐 구체적인 관직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 태종~세종대까지 총 35건의 시무상소 중 작성자의 구체적인 정보를 밝힌 것은 5건이 있는데, 좌의정, 영의정, 충청도 관찰사, 가각고 부녹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 작성자 정보를 밝혔다. 또한 삼사 23건, 의정부 8건 등 대부분 삼사와 의정부에서 시무상소의 작성을 맡고 있다. 이처럼 조선초기에는 작성자 정보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서 삼사와 의정부 등 관서 자체에서 시무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다가, 성종대 이후로는 구체적인 작성자 정보까지 밝히는 변화가 나타난다. 성종~철종대까지 총 69건의 시무상소 중 작성자 정보를 밝힌 것은 모두 6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성종대 이후 구체적인 작성자 정보의 추이를 통해 나타나는 흥미로운 점은 시무상소 주체의 관직이 점차 하위 관직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성종, 중종, 선조대까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무상소를 올리는 주체는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었다. 사간원의 경우 대사간, 홍문관의 경우 부제학, 사헌부의 경우 대사헌 등 삼사의 장관급이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의정부의 경우 영의정, 우참찬, 좌찬성 등 2품 이상의 당상관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인조대 이후 변화가 나타난다. 삼사의 장관급이 아닌 하위 관직자의 명의로 시무상소를 올리는 주체가 바뀐 것이다. 홍문관의 경우 응교(정4품), 부응교(종4품), 수찬(정6품) 등이, 사간원의 경우 헌납(정5품), 정언(정6품) 등이, 사헌부의 경우 장령(정4품), 지평(정5품) 등이 상소의 명의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무관과 유학이 시무상소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화이다. 무관은 효종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정조대까지 총 4건이 집계되는데, 정조대 황해도 수군 우후(水軍虞候)의 상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3건은 부호군(종4품), 부사과(종6품), 사직(종6품) 등 모두 오위의 무관직이었다. 유학의 상소도 1건 등장하며, 지방관이 상소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 시기에는 관찰사가 주축이었다면 칠방(종6품)과 같은 하위 직급의 상소가 등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해 보면, 고종대 이전의 ‘시무’ 용어는 대부분 인재의 선발 및 시무상소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시무상소의 경우,

순조가 병조 정랑 김병연(金秉淵)의 시무상소에 대해 '언관(言官)이 아닌데도 언사(言辭)가 시무에 절실하다¹⁸⁾라고 했던 것처럼 삼사에서 논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시무를 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사의 기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무를 논하는 개별적인 주체는 당상관의 고위 관직이 독점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하관으로, 그리고 무관, 유학 등 다양한 계층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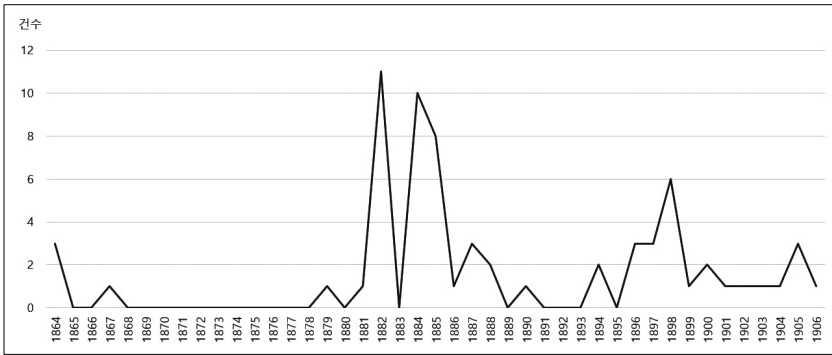
2) 고종대 '시무' 용어 사용의 변화와 특징

고종대는 조선 시대 전 기간을 통틀어 가장 빈번하게 '시무' 용어가 언급되었던 시기이다. 조선왕조 518년 간 『실록』에 언급된 시무 용어 총 367건을 27명의 국왕별로 평균을 잡으면 국왕 1인 당 13건 가량이며, 1년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해 당 0.7건 가량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고종대에만 총 67건 ([표1] 참조)의 시무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여타 왕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건수가 높은 것이다. 재위 기간 동안 30건 이상 집계된 경우는 태종, 선조, 고종대 밖에 없고, 선조대가 55건으로 높기는 하지만 고종대는 이를 훨씬 상회하여 최다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다. 고종의 재위 기간이 44년간으로 길었다고 해도 고종보다 재위 기간이 길었던 숙종대(46년)가 25건, 영조대(52년)가 20건이었음을 감안하면 고종대 시무 용어는 폭발적으로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종대에 연도별로 시무 용어가 등장하는 빈도수를 산정하였을 때 한 해당 1.5건 가량으로 여타 왕대 평균 0.7건의 두 배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종대에 시무 용어가 최다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종대 다음의 빈도수로 빈번하게 등장했던 선조대와 고종대의 공통점은 두 왕대가 모두 대외적인 충격이 강력하게 작용했던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무 개념의 강조는 국가가 대외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18) 『순조실록』 권12, 9년 5월 18일.

특징도 볼 수 있다.



[그림] 고종대 '시무' 용어의 집중 등장 기간과 건수

그런데 고종대의 빈도수를 시기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고종대 전 시기에 걸쳐서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일부 시기에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종 1년(1864)에 고종 즉위 직후 새 국왕의 즉위와 관련된 의례적 사용의 건 3건이 등장한 이후 20여년 가까이 시무 용어는 『실록』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고종 19년(1882)과 고종 21년(1884)~고종 22년(1885)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고종 31년(1894)~고종 35년(1898)의 기간에 다시 많은 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다. 즉, 1882년과 1884년, 1894년을 둘러싼 시점에 집중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시점은 한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 1882년 임오군란과 조미조약 체결, 1884년 청국 군대의 철수, 1894년 갑오개혁, 을미의병 등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내부적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던 시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시점의 빈도수의 합은 총 43건으로, 고종대 전체 67건 중 64%를 차지할 만큼 시무 용어의 언급이 이 시점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882년 상황의 경우, 임오군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외교 교섭이 긴박하게 이루어졌던 상황 가운데 시무 관련 기

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간략히 짚어보면, 1882년 6월 9일 임오군란이 발발한 후 청과 일본에 대한 외교적 대응이 정부 현안으로 대두했다.¹⁹⁾ 이어 7월 13일에는 정여창(丁汝昌)에 의해 대원군이 천진(天津)으로 압송되었으며, 7월 17일에는 조일강화조약과 조일수호조규 속약이 체결되었다. 바로 이 시점 직후에 『실록』에는 1882년도 분량의 시무 용어가 등장한다. 7월 19일, 일본과 조약 체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유원(李裕元)에게 고종은 ‘조약을 의논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지위와 명망이 높고 시무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이 직임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²⁰⁾ 외국과 관계에서 ‘시무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후 8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9개의 시무상소가 연이어 올라오는데, 이때 『민국공법』, 『조선책략』 등의 책을 수집하여 시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식영(池錫永)의 상소,²¹⁾ 서구의 기예를 배우고 시무를 아는 사람을 속히 승급하여 등용시켜야 한다는 고영문(高穎聞)의 상소²²⁾ 등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소들이 등장한다.

1884~1885년 상황의 경우,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머물러 있던 청국 제독 오장경(吳長慶)이 청국으로 귀환했던 상황과 맞물려 시무 용어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오장경은 1884년 2월 1일에 조선을 떠나는데, 3월 이후의 시무상소에서는 변방을 굳건히 지키고, 군사를 양성하는 문제를 언급한 내용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²³⁾ 이는 1883년 말 통상 구역인 원산의 단속과 관북 지역의 방어에 대한 서북경략사 어윤중(魚允中)의 보고²⁴⁾ 및 봉천 조선 변민 교역 장정[奉天與朝鮮邊民交易章程] 체결²⁵⁾ 등 청국과 외교관계에서 지속적

19) 『고종실록』 권19, 19년 6월 12일. “홍순목이 아뢰기를, ‘우리나라가 오늘 직면한 문제에 대하여 급히 북경(北京)과 일본(日本)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문(咨文)과 서계(書契)를 만들어 밤을 무릅쓰고 의주 부윤(義州府尹)과 동래 부사(東萊府使)에게 하송(下送)하여 전달해 보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20) 『고종실록』 권19, 19년 7월 19일.

21) 『고종실록』 권19, 19년 8월 23일.

22) 『고종실록』 권19, 19년 9월 22일.

23) 『고종실록』 권21, 21년 3월 20일, 6월 17일, 7월 24일, 9월 13일, 11월 26일.

24) 『고종실록』 권20, 20년 11월 23일.

25) 『고종실록』 권20, 20년 12월 3일.

으로 존재했던 위협이 국가 현안이었던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1894년 상황의 경우, 갑오개혁으로 시무를 이는 인재를 선발해야 했던 상황과 관련하여 시무가 언급되는데, 당시 김홍집에게 영의정 및 군국기무처 총재의 임무를 맡기면서 시무가 한창 급하니 제수한다는 취지의 고종의 언급으로 시무 용어가 사용된다.²⁶⁾ 또한 군국기무처 〈선거 조례(選舉條例)〉에도 ‘시무를 이는 사람을 선발’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²⁷⁾ 그리고 당시의 위기와 급격한 변화상에서 후퇴하여 다시 옛 제도를 회복하지는 주장의 상소에서는, 이를 ‘시무를 모르는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 것을 당부하여,²⁸⁾ 변화의 움직임이 곧 시무임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종대의 시무 용어 사용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의 대외적 위기 및 변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과 함께 이 시기 시무 용어를 사용하는 주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도 주목되는 점이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고종대 전에는 시무를 언급하는 주체가 주로 삼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중요 관료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고종대 시무상소를 생산하는 주체는 삼사의 비율이 대폭 줄어든 반면, 이전 시기에는 시무의 주체가 되지 못했던 유학, 진사, 무관 등의 인물들이 높은 비율로 등장하고 있다.

[표5] 고종대 시무상소의 주체별 건수

| | | | | | | | |
|----|---|--------|----|----|---|------------------------|---|
| 삼사 | 6 | 유학, 진사 | 12 | 무관 | 9 | 기타(성균관, 승문원, 군수, 참찬 등) | 9 |
|----|---|--------|----|----|---|------------------------|---|

위의 [표5]은 고종대 시무상소 총 36건의 주체별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고종대 시무상소의 주체는 유학·진사와 무관이 합

26) 『고종실록』 권31, 31년(1894) 6월 25일.

27) 『고종실록』 권32, 31년(1894) 7월 12일.

28) 『고종실록』 권34, 33년(1896) 4월 28일. “은 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갑오년(1894) 6월 변란[갑오개혁: 필자주] 때에 격분을 품고서 난동의 싹이 이미 텃고, 지난해 8월 변란[을미사변: 필자주]에 원통함을 머금고 난동이 이미 자라났으며, 지난해 11월 변란[단발령, 양력 채용: 필자주]에 분노가 쌓여 난동이 이미 번졌습니니다. … 새 법을 고치고 옛 법을 일체 회복함으로써 … 신의 말을 시무(時務)를 모르는 속된 선비의 예사로운 이야기로 여기지 말고 빨리 묘당(廟堂)에서 채택하게 하소서.”

쳐서 21건으로 집계되어 전체의 60% 가까이 차지한다. 반면 이전 시대의 주체였던 삼사의 비율은 16%밖에 되지 않는다. 시무 논의가 전통적인 주체였던 삼사에서 유학과 무관으로 넘어간 것이다. 또한 시무상소에서 시무 논의의 주체가 지방관인 경우에도, 고종대 이전에는 관찰사 등 고위급 지방관의 영역이었다면, 고종대에는 군수급으로 내려와 있다. 이러한 양상을 통해 고종대 시무 논의의 주체가 전통시대의 삼사 혹은 중앙정부의 관료에서 유학, 진사 등 일반인으로, 그리고 고위직에서 하급관리와 무관으로 확장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19세기 '시무' 용례와 의미

1) 박규수 중심 정국운영 세력의 '시무' 개념 인식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무' 용어를 주로 사용한 전통적 주체는 조선 시대 삼사의 관료 혹은 중앙정부의 고위직이었다. 따라서 19세기 특히 고종대를 전후한 '시무'의 용례와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이 시기 삼사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핵심 관료들이 '시무'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절에서는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당대의 여러 관료 집단 중에서도 '시무', 즉 눈앞에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최전면에 나서서 대응해 왔던 대표적인 인물군이었다.²⁹⁾ 또한 이들 대부분은 삼사 인관직의 하위직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대사헌 등 장관의 임무를 역임한 19세기 핵심 관료들이었다.³⁰⁾ 따라서

29)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일군의 정치집단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이어지는 조선의 전통적 사상을 기반으로 한 개혁세력으로 '시무개혁 세력'으로 규정되기도 하였다. 한보람, 앞의 논문, 2019; 한보람,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회, 2021.

30) 이들 집단에 속하는 인물로는 박규수, 金永爵, 申錫愚, 南秉哲, 魚允中, 金弘集, 朴定陽, 金允植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모두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의 관직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박규수의 경우 사간원 정언(1848), 사헌부 장령(1852), 사헌부 대사헌(1864), 홍문관 제학(1864)을, 김영

이들은 조선 시대에 전통적으로 시무 논의를 담당해왔던 관료군에 부합하는 인물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중 박규수와 김윤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무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박규수는 이들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중심점이 되는 핵심 인물이며, 김윤식은 ‘시무설(時務說)’을 통해 그의 시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볼 수 있는 글을 남긴 인물이다.³¹⁾ 또한 김윤식은 다음 절로 이어지는 시무 개념의 확산을 보여주는 육용정이라는 인물과 교유 관계에서 대비시켜 볼 수 있는 인물이라는 특성이 있다.

먼저 박규수의 시무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면, 그가 지은 다음의 시구(詩句)와 이 시를 쓸 당시 그가 처한 상황은 그에게 ‘시무’가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준다.

냉철한 눈으로 시무(時務)를 살피고, 겸허한 마음으로 고서를 읽는다.³²⁾

위의 시는 효명세자가 1830년에 사망한 후 실의에 빠져 과거를 보지 않고 경전과 역사서를 읽으며 지내던 박규수에게 누군가 벼슬에 나가기를 권하자 답변으로 지어주었던 시이다. 그는 세도정권의 독단적 정국운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며 정계에 합류하지 않다가 헌종대에 다시 정치 기강을 만회하는 분위기가 일어나자 20년 가까운 오랜 정치적 공백을 마치고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정계에 나아가게 된다.³³⁾ 이처럼 오랜 공백기 동안 그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던지는 ‘때에 따라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라

작의 경우 홍문관 제학(1865), 사헌부 대사헌(1865)을, 신석우의 경우 사간원 정언(1835), 홍문관 부교리(1840), 사헌부 대사헌(1859)을, 남병철의 경우 사간원 정언(1835), 홍문관 부교리(1840), 사헌부 대사헌(1859)을, 어윤중의 경우 사간원 정언(1870), 홍문관 교리(1871), 사헌부 지평(1872)을, 김홍집의 경우 홍문관 부교리(1869), 홍문관 응교(1872)를, 박정양의 경우 홍문관 부교리(1869), 홍문관 응교(1872)를, 김윤식의 경우 홍문관 부교리(1875), 홍문관 부응교(1876) 등을 역임하였다.

31) 金允植, 『雲養集』 卷8, 「時務說」.

32) 朴珪壽, 『獻齋集』 3권, 「歲暮寄人」, “冷眼看時務, 虛心讀古書”(번역은 2016~2017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로 총 4권으로 발간한 국역본의 내용을 참조함).

33) 朴珪壽, 『獻齋集』 卷1, 「節錄獻齋先生行狀草」.

는 의미를 가진 '시무'라는 하나의 단어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박규수 당대의 시무는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롭게 대두된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 스스로의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었다. 박규수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철종 12년(1861) 열하 문안사(熱河間安使)의 부사(副使)로 연행을 떠나기 전에 지우들과 작별 모임을 가지면서 쓴 시에서 '서생이 어찌 시무를 알겠느냐'는 오늘 영광스럽게 사신에 선발되었다'고 하였다.³⁴⁾ 시무를 잘 모른다는 겸양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는 1860년 북경 함락 직후의 중요한 시점에 청국의 상황을 확인하려는 것이 시무와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당대 국제 정세를 파악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무를 아는 것이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시에서 그는 '승냥이와 범이 날뛰고, 육지와 바다에 풍진이 가득한 이때 청국의 군센 병사인들 어찌 믿겠으며, 기강을 잃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³⁵⁾ 서양 세력의 침투와 그 소용돌이 속에서 청국이 처하고 있었던 현실에 대해 냉철한 눈으로 관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처럼 당대 박규수가 인식한 시무는 외국의 위협 앞에 선 국가 보존에 중점을 두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의 시무에 대한 인식도 국가적 위협에 대한 방어와 관련하여 국방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그는 당나라 덕종(德宗) 이후 국세가 약해진 상황에서 현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병제(府兵制)를 주장했던 단수실(段秀實)에 대해 '시무의 선후를 안 자'라고 평가하였다.³⁶⁾ 또한 '큰 논의와 계책을 세운 사람들은 사정이 어쩔 수 없다고 그 일을 폐기하지 않았으며, 비록 당시에는 성취할 수 없다고 해도 후세에 모범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³⁷⁾ 국정을 운영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34) 朴珪壽, 『獻齋集』卷3, 「辛酉孟春之六日 集鶴樵書室 分韻幽賞未已高談轉清 余得轉字 時余奉使熱河將出疆 聊以長句留別諸公」 “書生豈曾識時務, 此日榮被專對選.”

35) 朴珪壽, 『獻齋集』卷3, 「辛酉孟春之六日 集鶴樵書室 分韻幽賞未已高談轉清 余得轉字 時余奉使熱河將出疆 聊以長句留別諸公」 “豺虎縱橫鯨鯢出, 風塵鴻洞陸海遍, 兵馬馬壯豈足恃, 綱紀一失此可見.”

36) 朴珪壽, 『獻齋集』卷11, 「尙古圖按說十則」 “段公者可謂知時務之所先後者也, 其於府兵之制, 宜有所講究者矣.”

시무란 당대에 꼭 필요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면서도 미래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는 커다란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물론 박규수의 시무 인식이 군사적인 차원의 방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그는 자과 세력의 일원이었던 윤정현(尹定鉉)이 그 부친 윤행임(尹行恁)이 1861년 영의정에 추증되자 그에게 요청하여 지은 윤행임의 묘지명에서 그가 ‘시무를 의논함이 모두 경세실용(經世實用)의 학문이었다’라고 평하였다.³⁸⁾ 그가 인식한 ‘시무’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담보하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현안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이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박규수 이외에 이들 세력 중에서 ‘시무’ 용어를 사용하여 이에 대한 인식을 논설로 가장 뚜렷하게 남기고 있는 인물은 김윤식이다.³⁹⁾ 그는 1892년 『시무설』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시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여기에서 그는 ‘유생과 속된 선비는 시무를 모르며, 오직 준결만이 시무를 안다’는 후한(後漢) 사마휘(司馬徽)의 말을 들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⁴⁰⁾ 시무를 논할 수 있는 자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시무란 ‘당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마치 병자가 약을 먹을 때 딱 맞는 약을 먹어야만 하는 것과 같다.’라고 시무의 의미를 설명하였다.⁴¹⁾ 이는 ‘시무’가 당대 조선의 상황을 날카롭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정확히 내놓는 것과 연결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는 제갈량(諸葛亮)

37) 朴珪壽, 『獻齋集』卷11, 「尙古圖按說十則」, “然古之人建大議陳大計者, 未嘗以時之不可爲而廢其事, 事之不得施而廢其言者, 縱不得成就當時, 而猶能取範於後世也.”

38) 朴珪壽, 『獻齋集』卷5, 「吏曹判書贈領議政尹公行恁墓誌銘」, “自幼聰明秀異, 未弱冠而著錄盈箱, 質禮疑論時務, 皆經世實用之學也.”

39) 김윤식의 시무론에 대해서는 이상일, 『雲養 金允植의 政治思想研究』, 『태동고전연구』 6,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0, 88~94쪽; 김성배,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 의 상상력 -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2009, 139~142쪽; 김도형,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지식산업사, 2014, 64~73쪽; 유바다, 『김윤식의 외교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인물사연구』 24, 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36~38쪽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40) 金允植, 『雲養集』卷8, 「時務說」, “昔司馬德操謂漢昭烈曰儒生俗士, 不識時務, 識時務者, 其惟俊傑乎.”(번역은 2013~2014년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에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번역총서로 발간한 국역본의 내용을 참조함.)

41) 金允植, 『雲養集』卷8, 「時務說」, “夫所謂時務者何也. 卽當時所當行之務也. 猶病者之於藥, 皆有當劑.”

과 방통(龐統)이 유비(劉備)에게 '순리에 의지해 역적을 토벌하는 것은 강약에 관계없으니, 한 자 한 치의 땅이 없어도 단번에 한적(漢賊)을 섬멸하여 중원을 회복할 수 있고, 동오(東吳)도 병합할 수 있다'는 듣기에는 좋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의견을 내지 않고 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차지하라는 현실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유비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하였다.⁴²⁾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시무에 대한 인식은 당대의 현실에 부합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그는 당대 조선의 현실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조선에 적합한 조선만의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시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날의 논자들은 서양의 정치제도를 모방하는 것을 시무라고 하면서, 자기의 역량은 헤아리지 않고 오직 남만 쳐다본다.', '지금들 말하고 있는 '시무'는 모두 서양의 가지와 꽃과 잎이니, 뿌리를 굳건히 하지 않고 먼저 남의 말단을 배우려 한다면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⁴³⁾ 새로운 대외적 환경이 대두하고 막강한 외부 세력이 위협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무라고 보았다. 그는 서양과 청의 시무도 각기 다르고, 우리의 시무도 타국의 시무와는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만약 우리나라가 갑자기 청나라를 본받아 군비(軍備)에 전력한다면, 백성이 곤궁해지고 재정이 궁핍해져 우환을 겪게 될 것'이며, '지금 국세도 고려하지 않고 멀리 서양의 것을 사모한다면, 한 자의 땅도 없이 조조와 칼끝을 다투려는 것'이라고 하여,⁴⁴⁾ 우리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방법이 아닌 타국의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한다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42) 金允植, 『雲養集』卷8, 『時務說』“當昭烈之時, 天下大勢, 十之八九, 盡歸曹氏, 其可據而爲三分之基者, 惟荊益是已, 故孔明, 士元汲汲勸圖, 猶恐後時, 終能以此抗天下之全力. 此謂識時務之俊傑耳, 如以爲仗順討逆, 不係強弱, 雖無尺寸之資, 一舉而漢賊可滅, 神州可復, 東吳可並, 聽之甚美, 其實難副, 此豈非俗士之見乎.”

43) 金允植, 『雲養集』卷8, 『時務說』“今之論者, 以倣效泰西之政治制度, 謂之時務, 不量己力, 惟人是視. … 今之所謂時務, 皆泰西之枝條花葉也. 不固其本而先學他人之末, 可謂知乎.”

44) 金允植, 『雲養集』卷8, 『時務說』“若我國遽效清國之事, 專力於兵械, 則民窮財匱, 必有土崩之患. … 今不顧國勢, 而遠慕泰西之所爲, 是何異於不資尺土, 而欲與曹操爭鋒哉.”

생각을 밝히고 있다.

당시의 시점에서 그가 상정하고 있었던 우리의 시무는 ‘청렴을 숭상하고 탐오를 내치며 힘써 백성을 구휼하는 것, 그리고 삼가 조약을 지킴으로써 우방과 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⁴⁵⁾ 대내적으로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마찰을 빚어내지 않도록 하여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시무라 규정한 것이다. 이는 박규수를 중심으로 한 정국운영 세력이 최고의 목표로 두고 있었던 민생안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면서, 19세기 후반 시점에 조선의 국력과 재정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해외 문물의 수입보다는 대외적 충돌을 막는 방법을 우선시하는 것을 시무로 규정하고 있었던 이들 그룹의 시무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윤식을 비롯한 해당 그룹이 인식하고 있었던 시무는 당대에 꼭 필요한 해야 하는 일로, 그것이 청이나 서양을 모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맞는 시의적절하고 실용적인 국가 정책의 추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19세기 후반 ‘시무’ 논의의 확산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무 논의의 주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고종대에 이르러서는 그 주체가 일반 유생들과 무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당대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하나가 육용정(陸用鼎)(1843~1917)이다. 육용정은 충청도 청산(靑山) 지역 토반(土班)으로, 그의 가문은 청산에서 세거한 300년 동안 관직에 나간 이가 드물었을 만큼 중앙 정계와는 관련이 없던 인물이었다. 그의 집안은 역대로 무인 집안으로 행세했다고 하며,⁴⁶⁾ 육용정 역시 관직 경력이 서오릉(西五陵) 참봉, 휘릉원(徽陵院) 참봉과 같은 하위직을 잠시 맡은 것에 그쳤다.⁴⁷⁾ 따라서 그는 전통적

45) 金允植, 『雲養集』卷8, 『時務說』, “崇廉黜貪, 勤恤斯民, 謹守條約, 無啓衅於友邦, 此我國之時務也.”

46) 백승중, “『宜田記述』을 통해서 본 陸用鼎의 開化思想”, 『동아연구』 18,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43~47쪽; 민희수, 『1880년대 陸用鼎(1843~1917)의 현실인식과 東道西器論』, 『한국사론』 4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114~115쪽.

으로 시무를 논했던 인물 범위에 속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스스로도 시무를 논할 위치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혹자[客]가 그에게 시사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자신은 등용되어 쓰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갖는 것은 본분을 벗어나는 일[出位]'이라고 대답했던 점으로도 알 수 있다.⁴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전기술(宜田記述)』이라는 자신의 문집에서 '약론아동방당금시무시의(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시무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어, 19세기 후반 일반 향촌 인사로까지 시무 논의가 확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주목된다.

그가 향촌 인사로서 '약론아동방당금시무시의'에서 밝히고 있는 시무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 정치를 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변법(變法)을 한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제도의 변화를 시무와 연결시키고 있다. '옛 법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것들을 현실과 부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시무라는 자신의 인식을 밝힌 것이다.⁴⁹⁾ 하지만 이처럼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그 방식은 지극히 전통적인 시무론을 따르고 있다.

“대략 지금 바꿀 만한 것은 관제(官制), 관방(官方), 군제(軍制), 학규(學規), 과규(科規), 율문(律文), 재정(財政), 공안(貢案)인데, 그러나 이는 큰 경장입니다. 이는 운을 타고 인재를 얻은 연후의 일일 것입니다. 운을 타고 인재를 얻지 못했는데, 이 어찌 갑자기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⁵⁰⁾

47) 황재문, 『宜田陸用鼎의 文學과 現實認識』,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40쪽; 민희수, 위의 논문, 120쪽.

48) 陸用鼎, 『宜田記述』卷3, 『論當今局事勢』“然若余下國一鄉曲窮儒耳, 未曾見用於當今, 則當今時局事勢, 烏出聞之, 設有聞知, 出位之思, 言且不緊, 無如閉口守默.”(백승중, 위의 논문, 54쪽.)

49) 陸用鼎, 『宜田記述』卷3, 『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如有爲政於當今者, 不得不變法然後乃可也. 何者不是爲舊法之未善, 舊法譬如物久而弊也, 法久亦安得無弊乎.”

50) 陸用鼎, 『宜田記述』卷3, 『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大略今之可改者, 官制也, 官方也, 軍制也, 學規也, 科規也, 律文也, 財政也, 貢案也, 然此乃大變更也. 此在於乘運得人然後事也. 未有乘運得人, 此何可遽動乎.”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육용정은 관제 등 여러 제도를 바꾸는 대경장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인재를 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전통적인 인재 선발의 의미에서 시무를 강조하였다.

“인재는 본래 성하고 쇠퇴함과 온전하고 편중됨이 있으며, 또한 군주가 이끌어서 권려하여 씬에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바둑[奕棋]과 같으니, 같은 국면에서 바둑을 두어도 하수가 두면 막연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고수가 두면 불과 몇 수를 바꾸고 선후를 이는 것이어서 바둑판의 형세는 이미 기회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일대사에 어느 시대인들 인재가 없었겠습니까. 망한 나라는 버리고 흥한 나라는 등용한 것이니, 하수는 버리고 고수를 등용한 것입니다. 크게 쓰일만한 인재는 그러한 사람이 진실로 있을 것이며, 그 나머지는 군주께서 이끌어 권려하여 씬에 마땅함을 얻을 것입니다.”⁵¹⁾

또한 어느 시대에나 인재는 있었으며,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하수를 버리고 높은 안목을 가진 고수를 등용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인재를 등용하는 것에 군주의 역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재 선발은 ‘오직 국왕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왕이 분발하여야 한다.’고 하여,⁵²⁾ 역시 국왕의 노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시무 논의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용정의 시무 논의가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육용정이라는 지역 토반까지 시무를 논하고 있다는 점은 고종대

51) 陸用鼎, 『宜田記述』卷3, 『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 “人才固有盛衰全偏, 而亦在於人君之導率, 率勵用之之得當也. 譬如奕棋也, 同以其局而劣手當之則漠然無可爲, 高眼當之則不過易置幾點知所先後, 而一局之勢, 已有可乘者矣. … 一代事何代無人, 亡國所棄, 興國之用, 劣手所棄, 高眼之用, 人才之可以專任大用者固有其人, 而其餘無非在於人君之導率 率勵用人之之得當也.”

52) 陸用鼎, 『宜田記述』卷3, 『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 “運固有其會而, 亦不無在於人君之奮發有爲也. 凡爲治都在於人君之奮發有爲也.”

시무 논의가 계층적, 지역적으로 확장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육용정이 스스로 '시국을 담당하지 않으면 시사(時事)와 시세(時勢)를 알지 못하니, 시무와 시의는 당국자(當局者)가 아니면 말할 수 없다'⁵³⁾고 하면서 '사심(私心)과 억견(臆見)으로 대략을 헤아려 말하겠다'고 밝혔던 점도 전통적 시무 논의의 담당자가 아닌 이들이 시무에 대해 실질적이면서 명료한 논의를 펼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당시로서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무 논의의 주체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이와 함께 시무 논의의 전통적 주체였던 김윤식이 육용정의 시무론을 읽어보고 그에 대한 평을 했던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윤식은 1887년부터 6년 가까이 충청도 면천(沔川) 지역에 유배되었는데,⁵⁴⁾ 이때 육용정의 양자 육종윤(陸鍾倫)이 김윤식을 찾아가면서 인연이 있었다.⁵⁵⁾ 두 사람의 인연은 김윤식이 육종윤의 부친 육용정이 서술한 『의전기술』에 대한 「서문」과 「평어」를 서술하는 것으로 이어졌다.⁵⁶⁾ 김윤식은 이 서문에서 육용정을 '당세의 시무[當世之務]에 뜻을 둔 인사'로, '견문이 넓고 뜻이 있는 선비'라

53) 陸用鼎, 『宜田記述』卷3, 「略論我東邦當今時務時宜」.“宜田子曰, 時務時宜如非當局者, 則尤不可言者也. 何者未當其局, 則不知時事時勢, 烏可言其時務時宜耶. 然此亦如以私心臆見大略揣之, 則亦不無略于可言也.”

54) 『고종실록』 고종 24년(1887) 5월 30일; 『고종실록』 고종 30년(1893) 2월 14일.

55) 김윤식은 육종윤의 친분관계의 대략에 대해서는 민회수, 앞의 논문, 119~120쪽 참조. 김윤식과 육종윤이 교류하고 있었던 것은 『雲養集』과 『續陰晴史』의 서술 내용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교류는 김윤식이 1887년 충청도 면천(沔川) 지역에 유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續陰晴史』에는 육종윤이 이 해 12월에 면천으로 김윤식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고(『續陰晴史』, 1887년 12월 1일), 『雲養集』에는 이날 육종윤이 그가 쓴 글 10여 편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글들에서 시무를 많이 논하였고 이로움과 폐단에 관해 심도 있게 진술했다는 김윤식의 소감이 들어 있다(金允植, 『雲養集』卷3, 「沔陽行吟集/陸生鍾倫自京來訪」.“陸君示所著論十餘篇, 多論時務深陳利弊.”). 이들의 관계는 이후로도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육종윤은 아관과천으로 일본에 망명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인 1900년대 초중반 무렵에 김윤식에게 편지와 시를 보냈고, 김윤식도 이에 대해 답하고 있다(金允植, 『雲養集』卷6, 「東菴稿」.“陸玉田鍾倫久客扶桑, 今年寄書與詩, 出婦吟及西遊諸篇, 自敘悲辛寄懷曠感, 余作此奉答.”). 또한 이후 일본 생활이 24년이 되는 시점까지도 육종윤의 거처였던 원서암(猿棲庵)의 편액과 서문을 써달라는 요청에 응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金允植, 『雲養續集』卷2, 「猿棲庵序」.“吾友玉田子客于東京之猿樂町, 名其所居室曰猿棲庵, 求余書扁額, 且徵序文. …雖然玉田青山之人也, 少遊政界, 爲風波所驅, 羈泊殊鄉, 殆近兩紀, 今老將至矣”).

56) 金允植, 『續陰晴史』, 1891년 2월 17일, 「宜田記述序」, 「宜田記述評語 三十四則」; 『雲養集』卷10, 「宜田記述序」.

고 높이 평가하였다.⁵⁷⁾ 그렇지만 『전(傳)』에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고 서술하여 역시 시무를 논하는 담당 주체가 직무 담당자였던 전통적 인식을 짚고 넘어간다. 그런데 김윤식은 이러한 인식이 있을지라도, ‘지금 사람들이 이 말을 굳게 고집해서 선비는 강학을 할 뿐이고 도를 논할 뿐이지 시무는 궁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편협한 일’이라고 하면서 향촌 인사의 시무론을 격려하였다.⁵⁸⁾ 물론 김윤식은 『평어』에서 육용정의 문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그의 견해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등 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의견을 밝히고 있다.⁵⁹⁾ 하지만 『의전기술』 마지막의 시무를 논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시국을 알지 못하는 자라도 한 번 보면 훤히 알게 되는 유용한 글’이라고 특별하게 평가하였다.⁶⁰⁾ 이는 전통적으로 시무 논의를 담당해온 주체였던 김윤식조차 향촌 인사가 시무론을 펴는 것에 대해 폄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종대의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19세기 후반 조선은 새롭게 대두한 대내외적 환경을 맞이하여 현실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변화의 도모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시무’, 즉 ‘때에 따라 중요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서 그 어느 때보다

57) 金允植, 『雲養集』 卷10, 『宜田記述序』 “靑山陸宜田博聞有志之士也. 其學根據經術, 汎覽百家, 尤有意於當世之務.”

58) 金允植, 『雲養集』 卷10, 『宜田記述序』 “傳曰不在其位, 不謀其政. 今之人膠執此說, 以爲士當講學而已, 論道而已, 時務非所宜究, 何其拘也.”

59) 황재문, 앞의 논문, 39~40쪽.

60) 金允植, 『雲養集』 卷10, 『宜田記述序』 “最後當今時局一節, 洞論瀛寰大勢, 交際情形, 如懸鏡照奸, 燃犀燭怪. 雖不識時局者, 一見可以瞭然, 豈非有用之文乎.”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 '시무' 개념은 고종대 뿐 아니라 조선 초기부터 전시기에 걸쳐 조선의 정치적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전체에 나타나는 '시무' 용어를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특징과 추이가 나타났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는 『실록』에서 '시무' 용어의 등장이 조선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몇몇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고종대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선 초기에는 국가 기틀을 마련했던 태종대, 조선 중기에는 반정과 양란 등 국내외로 국가 위기 상황을 맞이했던 중종, 선조, 인조, 효종대, 조선 후기에는 국왕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갔던 정조대에 그 언급이 두드러졌다. 그렇지만 조선 전시기에 걸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종대로, 이 시기에는 조선 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잦은 빈도수로 '시무'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종대가 국정 운영상 위기의식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두드러지게 높아졌던 시기였음도 알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시무' 용어가 쓰이는 용도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를 용도별로 크게 구분해 보면, 의례적으로 사용된 경우, 시무상소에서 사용된 경우, 실제 문제가 존재할 경우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의례적 사용의 경우 인재 선발과 인재 평가, 과거 책문 등 주로 인재의 등용시에 쓰여, '시무를 이는 것'이 조선 시대 인재 선발의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은 시무상소에서 '시무' 용어가 사용된 경우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종대 이전과 이후로 시무 논의의 주체의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조선 초중기까지 시무를 논하는 주체는 주로 중앙 정부의 고위 관료와 삼사였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차 하위직으로 내려가는 변화를 보이는데, 고종대에는 특히 유학과 무관으로까지 시무 논의의 주체가 대폭 확장되는 변화를 맞고 있다.

이처럼 고종대 시무 논의가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확장되는 역사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그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 것은 전통적 주체였던 삼사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고위직 관료였다. 그중에서도 박

규수 중심의 정국운영 세력은 당대의 여러 관료 집단 중에서도 ‘시무’, 즉 눈앞에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최전면에 나서서 대응해 왔던 개혁 성향의 대표적인 인물군이였다. 또 이들은 삼사 언관직의 하위직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대사헌 등 장관의 임무를 역임한 19세기 핵심 관료들이었기 때문에, 조선 시대에 전통적으로 시무 논의를 담당해왔던 관료군과 부합하는 인물군이기도 했다. 이들 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시무 인식의 특징은 새롭게 대두한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필요한 변화를 실용적으로 추진하되 민생안정이라는 전통적 정국운영의 목표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타국의 기준이 아닌 조선 스스로의 기준으로 현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주체뿐 아니라 향촌 인사 육용정의 시무 논의를 통해 고종대의 시무 논의가 확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육용정의 시무 인식은 인재 선발을 위한 국왕의 노력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시무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는 고종대 시무 논의의 주체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선 시대 ‘시무’ 개념은 전통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여정에서 그 논의의 내용과 주체 면에서 당대에 맞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시무’는 당대의 필요에 맞추어 변혁하는 조선왕조의 정치 운영의 기초를 담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이며, 전통을 기반으로 우리의 근대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근대의 실체를 탐구하기 위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선 시대 ‘시무’ 개념의 특징과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앞으로 이러한 당대 정국 운영세력의 정치적, 사상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보다 명확한 우리 근대의 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자료

- 『續陰晴史』.
 『承政院日記』.
 『雲養續集』.
 『雲養集』.
 『宜田記述』.
 『朝鮮王朝實錄』.
 『臞齋集』.

2. 단행본

- 강재언, 『한국의 개회사상』, 비봉출판사, 1981.
 김도형, 『근대 한국의 문명전환과 개혁론』, 지식산업사, 2014.
 김성배,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2009.
 김태웅, 『어윤중과 그의 시대』, 아카넷, 2018.
 _____, 『대한제국과 3.1운동』, 휴머니스트, 2022.
 이광린, 『한국개회사연구』, 일조각, 1969.
 _____, 『개화당 연구』, 일조각, 1973.
 _____, 『개화파와 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89.
 한국현대사회연구회, 『한국근대 개회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한철호, 『한국 근대 개화파와 통치기구 연구』, 선인, 2009.

3. 논문

- 김태웅, 『이유원의 경세론과 국제정세인식』, 『진단학보』 128, 진단학회, 2017.
 _____, 『수구·개화 이항 대립 틀의 허상 탈피 - 조선후기 時務改革論의 추이와 변화 -』, 『역사교육』 157, 역사교육연구회, 2021.
 노관범, 『대한제국기 진보 개념의 역사적 이해 - 언론 매체의 용례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_____, 『대한제국기 실학 개념의 역사적 이해』, 『한국실학연구』 25, 한국실학학회, 2013.
 _____, 『대한제국기 신채호의 '아(我)' 개념의 재검토』, 『개념과 소통』 14, 한림과학원, 2014.
 _____, 『조선 말기 유신 개념의 역사적 이해 - 고종·순종 시기 『승정원일기』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5-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_____, 『'개화와 수구'는 언제 일어났는가?』, 『한국문화』 8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_____, 『조선시대 '利用厚生'의 용법과 어휘 추세 - 한국문집총간 정집을 중심으로』, 『한국실학연구』 40, 한국실학학회, 2020.
 민회수, 『1880년대 陸用鼎(1843~1917)의 현실인식과 東道西器論』, 『한국사론』 4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2002.

- 백승중, 『“宜田記述”을 통해서 본 陸用鼎의 開化思想』, 『동아연구』 18,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 오승철, 『근대 개화사상의 발전과 분화에 관한 연구 -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를 중심으로』, 『민족사상』 11-2, 한국민족사상학회, 2017.
- 유바다, 『김윤식의 외교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한국인물사연구』 24, 한국인물사연구회, 2015.
- 이경구, 『조선 시대 실학 용법에 대한 거시적 일고찰』, 『개념과 소통』 26,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0.
- 이상일, 『雲養 金允植의 政治思想研究』, 『태동고전연구』 6,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0.
- _____, 『윤양 김윤식의 사상과 활동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 최진식, 『한국근대의 온건개화파 연구 - 김윤식 · 김홍집 · 어윤중의 사상과 활동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
- 허명준, 『근대 전환기 증친 관료 이현영의 가문의식과 시무인식』, 『국학연구』 34, 한국국학진흥원, 2017.
- 하원호,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의 역사적 변화』,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 한보람, 『고종대 전반기 시무개혁 세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_____, 『19세기 시무개혁 세력의 성장과 개혁론의 성격』, 『한국사상사학』 64, 한국사상사학회, 2020.
- _____, 『개항 전후 신헌(申櫛)의 시무개혁론 연구』, 『한국문화』 90,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0.
- _____, 『19세기 경화학계 개혁론의 가치 지향과 현실 대응』,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회, 2021.
- 한철호, 『시무개화파의 개혁구상과 정치활동』, 『한국근대 개화사상과 개화운동』, 신서원, 1998.
- 황재문, 『宜田陸用鼎의 文學과 現實認識』, 『한문학보』 22, 우리한문학회, 2010.

The Notion and the Significance of the Contemporary Affairs in Gojong's Reign

HAN BORAM*

"Contemporary Affair(時務)" is a concept that means "something important and urgent to do at current times," and has been continuously established in the flow of Joseon politics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Analysis of the term "Contemporary Affair"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reveals several characteristics and trends. The use of the term "Contemporary Affair" is largely divided into uses, such as when used as a ritual use, in the case of a trial appeal, and when an actual problem exists. In the case of ritual use, it is mainly used when recruiting, such as talent selection, talent evaluation, and past books, indicating that "knowing the mission" was an important criterion for talent selec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addition, through the case of the "Contemporary Affair" appeal, it can be seen that the subjects of the discussion of "Contemporary Affair" were mainly high-ranking officials and Samsa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as it went down to the late Joseon Dynasty, it expanded to study abroad. In particular, the use of the term "Contemporary Affair" appears to be the highest frequency in Gojong's reign, indicating that it was a time when awareness of the crisis and the need to respond to it in state administr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Another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is that it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goal of political management, which was based on the traditional political management

* Lecturer, Daejeon University

of stabilizing people's livelihoods, while practically promoting necessary changes according to the new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discussion of local government officials Yuk Yong-jeong's municipal affairs, and Yuk Yong Jeong's perception of municipal affairs has limitations in emphasizing the king's efforts to select talent. However, thi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shows that the subject of the discussion of the municipal affairs of King Gojong is expanding from the center to the provinces and from the upper to the lower levels.

Key words : Contemporary Affair, Gojong's Reign, Park Kyu Su, Yuk Yong Jeong